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4 .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2일, 백선희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3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3.2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2차 국방위원회(2026.3.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백선희 의원)

현행법은 군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인 의료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군인이 심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특히 12·3 불법계엄과 같이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남긴 사안에 동원된 장병들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장병의 정신건강은 군 전투력 유지뿐만 아니라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PTSD 등 정신질환을 겪는 경우 의료지원 뿐

만 아니라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통한 상담 및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 및 현행 제도 운영상 관련 지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PTSD 등의 정신질환에 관한 사항을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예방 및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범위에 정신질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대안에 반영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